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318호
- 나. 제 안 자 : 허 훈 의원(찬성자 14명)
- 다. 제 안 일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벽보, 현수막,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
- 그러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기존의 제28조 조문 제목인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을 불법 유동 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함(안 제28조 제목)
- 나.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항)
- 다.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나.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광고물’의 정의가 규정되어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28조제1항에 ‘유동광고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4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바, 안 제28조 조문 제목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u>&lt;신 설&gt;</u></p> <p>①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b>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b>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b>불법광고물 정비</b>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b>불법광고물 합동점검</b>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 <b>불법광고물</b>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b>유동광고물</b>”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b>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b> 등을 말한다.</p> <p>② ----- ----- <b>불법 유동광고물</b>----- -----</p> <p>③ ----- -----<b>불법 유동광고물 정비</b>----- <b>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b>-----.</p> <p>④<b>시장·구청장은</b>----- ----- <b>불법 유동광고물</b>----- <b>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b> ---.</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나. 검토 내용

### (1) 조문 제목 변경(안 제28조)

- 현행 조례 제28조는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및 수거의 비용을 구청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조문 제목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포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 판단됨

### (2) 유동광고물의 정의(안 제28조제1항)

- 현행 조례 제28조의 주요 내용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것이나 해당 조항에 따른 관리 대상인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는 현행 조례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통해 조례 해석과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항에서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으나, ‘유동광고물’은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편의상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동광고물’은 ‘자유로이 움직이는’ 광고물

로서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등을 일컬으며 ‘고정(固定)광고물’은 한곳에 꼭 붙어있는 창문이용, 벽면이용, 돌출, 공연, 옥상, 지주이용 간판 등으로 규정하여 사용되어왔음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제1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유동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는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불법 유동광고물’로 일괄 수정하는 것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17. 특정광고물: 그 밖에 이 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 (3) 비용 지원(안 제28조제4항)

- 현행 조례 제28조제4항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3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제1항<sup>1)</sup>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에게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추가하고자 함
- 상위법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 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조례개정인만큼 효율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28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의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을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로 포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합하다 판단됨
- 또한 제28조제3항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1)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조항으로, 시장은 구청장에게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적극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추가예산 투입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